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불요불급하게 된 사용자의 ‘재정안정화계획서’ 작성 제도를 폐지하고, 대신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할 사항에 ‘적립금 부족 해소 현황’을 추가하는 한편,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‘사용자부담금’뿐만 아니라 ‘가입자부담금’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,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에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’를 추가하며,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교육과정의 교육비 등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11. ~ 9. 20., 11. 16. ~ 11. 23.) 결

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여부”를 “제7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 현황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.

제16조의15제1항 및 제2항 중 “사용자부담금”을 각각 “사용자부담금, 가입자부담금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16제1항 중 “사용자”를 “사용자 또는 가입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자가”를 “사용자 또는 가입자가”로, “계좌로”를 “계좌 또는 법 제2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”로 한다.

제16조의17제2항 중 “사용자”를 “사용자 또는 가입자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교육은”을 “교육(검정시험을 포함한다)은”으로, “이수”를 “이수, 교육비 및 검정시험 수수료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제33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3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

제36조의2 중 “평가를”을 “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1조제7항 중 “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업무
2.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사단체,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·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업무
3.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업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입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재정검증 결과의 통보) ①	제6조(재정검증 결과의 통보) ①			
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6조제	-----			
2항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과 법	-----			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	-----			
본문에 따른 최소적립금(이하	-----			
“최소적립금”이라 한다)을 비교	-----			
하여 적립금의 부족 여부, 적립	-----			
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, 제7조	----- 제7조			
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안정화	제2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			
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사용자	현황 -----			
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	-----.			
만,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	-----			
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	-----			
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	-----			
우에는 그 노동조합에도 서면으	-----			
로 알리고, 근로자의 과반수가	-----			
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	-----			
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서면 또	-----			
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	-----			
알려야 한다.	-----.			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	
제7조(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	제7조(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			
해소방안) ① (생략)	해소방안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	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			

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.

1.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할 것

2. 사용자는 제1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,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(이하 “재정안정화 계획서”라 한다)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할 것

3.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할 것

제16조의15(지원금의 지원대상 등)

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.

제16조의15(지원금의 지원대상 등)

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.

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6조의16(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) ① 사용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.

제16조의17(지원금의 환수) ① (생략)

②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

① -----
----- 사용자부담금, 가입
자부담금 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사용자부담금, 가입
자부담금 -----

-----.

제16조의16(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) ① 사용자 또는 가입자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사용자 또는
가입자가 -----

계좌 또는 법 제23조의8 각 호
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금제
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----
--.

제16조의17(지원금의 환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할 금액, 납부 기한 및 방법을 문서로 고지·징수해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28조(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) ① (생략)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, 교육과정 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
③ (생략)

제32조(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)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“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.

1. (생략)

2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

----- 사
용자 또는 가입자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교육(검
정시험을 포함한다)은 -----

이수, 교육비 및 검정시험 수수료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~ 다. (생략) <u>라.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 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 행 상황</u> 마. (생략) 3. (생략) ② (생략) 제33조(사용자의 금지행위) 법 제 32조제4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1. ~ 4. (생략) <u>5.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 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 위</u> 제34조(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 위) ①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1. ~ 8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</u> 마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33조(사용자의 금지행위) 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제34조(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 위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9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제36조의2(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<u>평가를</u> 매년 실시한다. 제41조(권한의 위탁·위임) ① ~ ⑥ (생략)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<u>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</u> 업무를 근로복지공단 에 위탁한다.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⑧·⑨ (생략)	제36조의2(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) ----- ----- ----- <u>평가를</u>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-----. 제41조(권한의 위탁·위임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</u> ----- -----. 1. <u>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</u> <u>업무</u> 2. <u>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</u> <u>노사단체, 퇴직연금업무 유관</u> <u>기관·단체와의 공동 연구사</u> <u>업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</u> <u>업무</u> 3. <u>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</u> <u>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</u> <u>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업무</u> ⑧·⑨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657